

#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819
----------	------

2020년 12월 22일  
보건복지위원회

## I.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0년 8월 12일 이준형 의원의 11명
2. 회부일자 : 2020년 8월 21일
3. 상정일자 : 제298회 정례회 제8차 보건복지위원회

【2020년 12월 17일 상정·의결(수정안 가결)】

## II. 제안설명의 요지 (이준형 의원)

### 1. 제안이유

- 서울시 성매매집결지 폐쇄정책에도 불구하고 성매매피해자 등은 다시 사회로 진입하지 못하는 어려움에 처해있음. 이에 성매매피해자 등에게 생활안정, 주거이전, 직업훈련 등의 지원을 통해 탈 성매매와 자활에 필요한 서울시 차원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성매매피해자 등에 대하여 자립·자활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  
(안 제11조의2 신설)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 Ⅲ.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문성)

#### 1 조례안의 개요

- 서울특별시 관내 성매매집결지의 폐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자립·자활을 지원하여 성매매 재유입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로의 복귀를 도모하기 위해 제안되었음.

#### 2 주요사항 검토

##### □ 성매매피해자등 지원 (안 제11조의2 신설)

- 개정안에서는 시장에게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이하 ‘성매매피해자등’)의 인권 보호 및 자립·자활을 위해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4호1)에서 시장에게 ‘성매매피해자등

1)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이하 "성매매피해자등"이라 한다)의 보호, 피해 회복 및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신고체계의 구축·운영
2. 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 법령 정비 및 정책 수립
3. 성매매피해자등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외국인을 위한 시설을 포함한다)의 설치·운영
4.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주거지원, 직업훈련, 법률구조 및 그 밖의 지원 서비스 제공

에 대한 주거지원, 직업훈련, 법률구조 및 그 밖의 지원 서비스 제공'을 규정하고 있는 바,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 다만 선정된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계유지, 주거지원, 직업훈련 등에 필요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세부적인 지원 내용에 별도의 세부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현행	개정안
<p><u>&lt;신설&gt;</u></p>	<p><u>제11조의2(성매매피해자등 지원)</u></p> <p><u>① 시장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이하“성매매피해자 등”이라 한다)의 인권 보호와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u>1. 생계유지 등을 위한 생활안정 지원사업</u></li> <li><u>2. 주거지 마련을 위한 주거이전 지원사업</u></li> <li><u>3. 사회복귀 등을 위한 직업훈</u></li> </ol>

5.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보호·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 체계의 구축·운영

6. 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 예방을 위한 유해환경 감시

	<u>련 지원사업</u> <u>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u> <u>인정하는 지원사업</u>
--	---

- 개정안에서는 지원대상을 ‘영등포구 영등포동 일대, 성북구 하월곡동 일대, 강동구 천호동 일대 성매매집결지의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한정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동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음.
- 즉 동 제정안은 성매매집결지 폐쇄 및 이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성매매집결지의 폐쇄는 도시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시행주체인 각각의 자치구에서 추진하고 있음.
  - 또한 이미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라 집결지의 폐쇄 및 이주 절차가 마무리 단계인 강동구를 제외한 영등포구와 성북구는 각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2019.12.26., 제정/시행)와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매매 예방 및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2017. 11. 7., 제정/시행)를 기제정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많은 상황임.
- 개정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자치구 정비사업에 따른 성매매 여성 자활지원 예산을 서울시가 마련하는 것은 재정 부담이 크다는 점과 서울시에는 다양한 형태의 성매매업소가 존재하고 있어

지원의 형평성 논란과 집결지 성매매여성 지원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여론이 우려가 된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음.

<집결지별 도시환경정비사업 진행 >

자치구	집결지명	관련 정비 사업
강동구	천호동 텍사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천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 2020.3. 이주완료, 철거 진행</li> <li>▪ 천호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 2020. 1. 이주 및 철거 완료</li> <li>▪ 천호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 2020. 12. 7. 관리처분계획 인가</li> <li>※ 이주 및 공가 요구 : 2021. 3월~8월 예정</li> </ul>
영등포구	영등포 역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0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성매매집결지를 포함하여 신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 (2010.5.)</li> <li>▪ 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특별계획구역 V-유곽밀집지 및 쪽방촌)(2012.1)</li> <li>▪ 성매매집결지 정비계획(안) 공람 공고 및 주민설명회 : 2020. 11.</li> <li>※ 정비계획(안) 입안 상정 : 2020. 12월 예정→ 정비계획 확정 : 2021년 상반기</li> </ul>
성북구	미아리 텍사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월곡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li> <li>- 사업시행인가 신청서 제출 : 2019. 7. 4.</li> <li>- 조합 설립 (변경) 인가 : 2019.10.15.</li> <li>-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주민 공람 : 2020. 6. 25.~7.9.</li> <li>- 사업시행계획 인가 : 2020. 8월</li> </ul>

- 한편 가출, 인신매매 등 의도치 않게 성매매 피해에 묶인 피해자 및 성매매에 자발적으로 종사하였으나 탈성매매를 원하는 사람의 경우, 일반인과 다른 특수한 환경 속에 오랜 시간 정체됨으로 인해 스스로의 의지로 자립·자활이 어려운 점이 있으며,
- 집결지 정비라는 국가정책에 의해 삶의 근거지와 일터를 동시에

잃게 된 사람들이 성매매 업소에 다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고 진정한 탈 성매매로 거듭나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 동 개정안의 주목적인 만큼 대상자 선정에는 더욱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p><u>&lt;신설&gt;</u></p>	<p><u>제11조의2(성매매피해자등 지원)</u></p> <p><u>②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사업의 대상은 서울특별시 관내 성매매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업소들이 모여 있는 영등포구 영등포동 일대, 성북구 하월곡동 일대, 강동구 천호동 일대 성매매집결지의 성매매 피해자 등으로 한하며, 다른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u></p>

- 한편, 집결지폐쇄를 위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이 계획 수립 후, 통상 3년이상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부칙에서 효력 기간을 2022년 12월 31일로 규정할 경우 아직 계획수립 단계에 있는 영등포구 집결지 성매매 피해자등은 그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밖에 없는 바, 효력 기간을 늘리거나, 삭제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자치구별 도시환경정비사업 일정이 상이하여 부칙상 유효기간을 특정하는 것(2022.12.31.)은 지원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 3 종합 의견

- 동 개정안은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성매매집결지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성매매집결지의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립·자활을 지원하여 성매매 재유입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로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취지와 필요성이 매우 인정된다 할 것임.
- 다만 집결지 폐쇄를 위한 도시정비사업은 자치구청장의 사무이고 해당 자치구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도 시행하고 있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서울시가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 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요망된다 할 것임.
- 이 밖에 집결지폐쇄 부칙규정의 유효기간이 2022년말로 명시되어, 해당기간 내에 집결지 폐쇄 절차진행이 어려운 지역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유효기간의 확대나 삭제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V. 수정안 요지

##### 1. 수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재정여건 및 사무의 주체 등을 고려하여, 성매매집결지 폐쇄절차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을 “성매매피해자”로 한정함.

##### 2. 수정안 주요 내용

- 성매매집결지 폐쇄절차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을 “성매매피해자등”에서 “성매매피해자”로 수정함(안 제12조제2항).

#### VI.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819
----------	------------

제안년월일 : 2020년 12월 17일  
제안자 : 보건복지위원장

## 1. 수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재정여건 및 사무의 주체 등을 고려하여, 성매매집결지 폐쇄절차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을 “성매매피해자”로 한정함.

## 2. 수정의 주요 내용

- 성매매집결지 폐쇄절차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을 “성매매피해자등”에서 “성매매피해자”로 수정함(안 제12조제2항).

#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1조의2의 제목 “성매매피해자등 지원”을 “성매매피해자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이하“성매매피해자 등”이라 한다)”을 “성매매피해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성매매피해자 등으로”를 “성매매피해자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안	수정안
<p>제17조(관련정보의 제공) ① (생략)</p> <p>② <u>서울특별시민은</u></p>	<p><u>업</u></p> <p>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u>지원사업</u></p> <p>②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사업의 대상은 서울특별시 관내 성매매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업소들이 모여 있는 영등포구 영등포동 일대, 성북구 하월곡동 일대, 강동구 천호동 일대 성매매집결지의 <u>성매매피해자</u> 등으로 한하며, 다른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p> <p>제17조(관련정보의 제공)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서울특별시민(이</u></p>	<p>4. (개정안과 같음)</p> <p>②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사업의 대상은 서울특별시 관내 성매매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업소들이 모여 있는 영등포구 영등포동 일대, 성북구 하월곡동 일대, 강동구 천호동 일대 성매매집결지의 <u>성매매피해자</u>로 한하며, 다른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p> <p>제17조(관련정보의 제공) ① (현행과 같음)</p> <p>② (개정안과 같음)</p>

현행	개정안	수정안
<p>필요할 경우 여성폭력 예방·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에 근거하여 청구할 수 있다.</p>	<p><u>하 “시민”이라 한다)</u>  <u>은 -----</u>  -----  -----  -----  -----  -----.</p>	

##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성매매피해자 지원) ① 시장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매매피해자의 인권 보호와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계유지 등을 위한 생활안정 지원사업
2. 주거지 마련을 위한 주거이전 지원사업
3. 사회복귀 등을 위한 직업훈련 지원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사업의 대상은 서울특별시 관내 성매매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업소들이 모여 있는 영등포구 영등포동 일대, 성북구 하월곡동 일대, 강동구 천호동 일대 성매매집결지의 성매매피해자로 한 하며, 다른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하지 아니한다.

제17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민”을 “서울특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p><u>제11조의2(성매매피해자 지원) ①</u></p> <p><u>시장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매매피해자의 인권 보호와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u>1. 생계유지 등을 위한 생활안정 지원사업</u></li> <li><u>2. 주거지 마련을 위한 주거이전 지원사업</u></li> <li><u>3. 사회복귀 등을 위한 직업훈련 지원사업</u></li> <li><u>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u></li> </ol> <p><u>②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사업의 대상은 서울특별시 관내 성매매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업소들이 모여 있는 영등포구 영등포동 일대, 성북구 하월곡동 일대, 강동구 천호동 일대 성매매집결지의 성매매</u></p>

현행	개정안
<p>제17조(관련정보의 제공) ① (생략)</p> <p>② <u>서울특별시민</u>은 필요할 경우 여성폭력 예방·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에 근거하여 청구할 수 있다.</p>	<p><u>피해자로 한하며, 다른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u></p> <p>제17조(관련정보의 제공)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서울특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u>----- ----- ----- -----.</p>